

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

- ▶ 오피스텔을 건축물대장 용도(업무시설)가 아닌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분으로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를 하면, 재산세를 주택세율로 적용해 드립니다.

■ **근거법규** :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제1호(과세대상재산에 변동사유 발생 시 신고의무)

■ 신고대상

- ▶ 대상자 : 재산세 과세기준일(6월 1일)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
- ▶ 요 건

-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자(소유자 또는 임차인)가 **2024년 6월 1일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**를 하고
-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
- 오피스텔 전체를 주거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(공실 제외)

- 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전소유자의 주거용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신고
- ☑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물건으로 등록된 경우 신고 불필요
- ☑ 과세대상 변동신고(오피스텔에서 주택으로 변경)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사항[국세(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 등), 지방세(취득세)]은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신고
- ☑ 본 신고로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

■ **신고기간** : **2024. 6. 1. ~ 6. 15.**

■ 제출서류

1.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1부
2. 전입세대열람원(소유자 거주 시 전입일자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능)
3.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
4. 소유자 본인 신분증 (대리인 신고 시 : 소유자 본인 신분증, 도장 / 대리인 신분증)

■ 신고방법

- ▶ 방문 또는 우편(세무1과 재산세팀)
- ▶ 주 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(동춘동), 연수구청 세무1과

■ **문 의** : 세무1과 재산세팀 032) 749 - 7470